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2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6. 6. 8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중소벤처기업부 「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Ⅲ」에 따른 규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투명성·공정성을 강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제3항)
- 나.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의2)
- 다.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제3항)
- 라. 수탁자의 제3자 재위탁 관련 규정을 신설함(안 제11조의2)
- 마. ‘공익상’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라는 불명확한 표현의 협약 해지 사유 규정을 삭제함(안 제16조제1항제4호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6. 4. 16. ~ 5. 6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5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-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, 근거, 위탁기간 등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제3자 재위탁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. 다만,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무 중 그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③ (생략)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</u> <u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u> <u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u> <u>제5조의2(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)</u> <u>① 제5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u> <u>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

현행	개정안
제8조 (협약체결 등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8조(협약체결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군수는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, 근거, 위탁기간 등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 <u>제11조의2(제3자 재위탁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. 다만,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무 중 그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u>
제16조(협약해지 등) ① (생략) 1. ~ 3. (생략) <u>4.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</u>	제16조(협약해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